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4. 01. 16. (화)	총 5페이지 첨부파일 있음	담당자	김수현 변호사/상담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40 은혜빌딩 6,7층 <a href="http://www.teen-up.com">http://www.teen-up.com</a>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 위헌제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바라며 2024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경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하 ‘제청법원’)는 성인인 피고인(19세)이 온라인에서 추천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15세)가 중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약 13일 후 모텔에서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하 ‘당해 사건’)을 심리하면서 직권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

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고, 2022년 11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12월 29일 검찰총장은 위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23년 5월 29일부터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등에 의견 취합 및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14일 법무부장관은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여타 정부기관 등에서는 의견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 2. 제청법원의 위헌 주장의 요지

제청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지적·신체적·정신적·인격적 성숙도가 과거와 달리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같이 그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고는 지나치게 국가 후견적이고 청소년의 성 의식 및 인권의식 변화에 따른 이성 교제의 보편화 현상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를 초래해 수단의 적절성 또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3. 이해관계기관으로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반박 의견서 제출의 목적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채팅앱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이성 교제하는 사이로 오인케 하여 간음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양상이 진화해 왔고, 이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행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특성인데도, 제청법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위헌제청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이해관계기관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부터 1년여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제청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준비하여 2024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출하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에도 의견을 발송하였습니다.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사건을 겪으며,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비로소 개정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의견을 보태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이례적으로 반박 의견서 전문을 공개하오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해주시고, 첨부된 의견서를 토대로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십대여성인권센터 반박 의견서의 요지

-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 교제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며,
- 2) 대한민국 사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증가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좌시하여 왔음을 반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의 입법적 결단을 내린 점,
-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 연령을 13세로 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던 점,
- 4) 역사적으로 성적 행위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고,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들은 16세 이상을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
- 5) 미성년자의 뇌 발달 과정 및 심리적 특성에 따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성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탐색해 갈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아동이 성

적 대상으로 이용됨으로써 온전한 성적 발달이 해쳐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6) 대법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임을 명확히 실시하고 있는 점,

7)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일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이나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아동의 온전하고 건강한 성적 발달과 성장을 기반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성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기에 앞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대상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제청법원의 주장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인 점,

8)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판결문 분석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인해 그동안 처벌조항 미비로 보호받지 못했던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이 보도해주시고, 공론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3. 제청법원 위헌 주장의 요지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에 대한 의견
- 가.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이유
- 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 1) 유엔아동권리협약
  -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전해’
- 다. 의제강간 연령의 역사적 발전
- 라.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
- 1) 뇌 과학 발달의 관점
  - 2)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 3)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 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보호법익
- 바. 연령 기준의 설정의 필요성
- 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판결 분석
- 1)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연령 분포
  -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해자·피해자 접촉 경로
- 아. 소결
5. 결 론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